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50 호 2015. 5.26(화)

공 고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681호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 확대 및 조문 규정 구체화(안 제7조)
- 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 에서 ‘시간’ 으로 변경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 다.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 에서 ‘MB(메가바이트)’ 로 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
- 라.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안 별표5)
- 마. 기타(안 별표5)
 -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비용을 수

수료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 확대 및 조문 규정 구체화(안 제7조)
- 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 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 다.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
- 라.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안 별표5)
- 마. 기타(안 별표5)
 -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6. ~ 2015. 6. 15.(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3조의”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를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직”을 “등록기준지”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공부”를 “공적 장부”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수 건의 제증명등을”을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으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명에 대하여는”을 “증명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된”을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자가”를 “사람이”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을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청구한 때”를 “청구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5]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제7조 관련)

<고무인 규격>

위 증명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가로 8cm, 세로 2.5c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같다.</p> <p>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p>	<p><u>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따라 ----.</p> <p>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p>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u>각종 증명 등</u>----- -----</p>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납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
 -. -----
1명-----
 ----. -----등록기준지-----

 -----각종 증명 등-----.

② 여러 사람-----공적 장부-----
 --1명-----
 -----.

③ -----각종 증명 등-----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납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의 반환) -----
-----각종 증명 등-----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경우에는

-----증명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
-----따
라-----
각종 증명
3. -----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한
정한다)-----
---각종 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각종 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각종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한정한다)-----
-----각종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람이-----
-----각종 증명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
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
명 등

9. 「특수입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
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
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
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
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
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한 법률」 제7조-----

-----각종 증명

9.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
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
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② -----

-----.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
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

-----청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 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 전북남원033		
정책명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남원시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명	윤오성	전화번호 063-620-630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재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1일			
남원시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선영/063-620-6213)			
재정과장 귀하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 | | |
|----|---|
| 비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